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он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0	0	0	0
02월	0	0	0	0
03월	0	0	0	0
04월	0	0	0	0
05월	0	0	0	0
06월	76,500	5,010	0	0
07월	76,500	5,010	0	0
08월	76,500	5,010	0	0
09월	76,500	5,010	0	0
10월	178,500	11,690	0	0
11월	127,500	8,350	0	0
12월	127,500	8,35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739,500	48,430	0	0
총합계				787,930

- 1.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2.소득월액 보험료(보수외소득 7,200만원 초과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0	0
02월	0	0
03월	0	0
04월	0	0
05월	0	0
06월	112,500	0
07월	112,500	0
08월	112,500	0
09월	112,500	0
10월	112,500	0
11월	112,500	0
12월	112,500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리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합계	787,500	0
	787,500	

- 1.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중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한 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이며, 2016.12.15.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사항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	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	자2	종피보험	자3	
	푸르덴셜생명보	.험 (주)	(무)VIP변액유니	버셜종신			
보장성	120-81-39	9***	1830086	755	730606-****	엄민영	1,812,000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Readycar개인용기	자동차보험			
보장성	116-81-03	3***	71000160636	931000	730606-****	엄민영	275,170
	푸르덴셜생명보	.험 (주)	체증종신5%형	(무배당)			
보장성	120-81-39	9***	18100680	074	730606-****	엄민영	3,330,000
	미래에셋생명보	함 (주)	행복한 보장보험	성(무) 1304			
보장성	305-81-08	3***	8003200	779	730606-****	엄민영	315,000
	인별합계금액					5,732,170	

1. 세액공제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보장성 보험은 15%)를 공제

2. 공제대상금액한도: 100만원



2016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96-03*	신****	일반	11,300
3-90-80*	로****	일반	21,300
3-90-97*	동*****	일반	46,200
5-08-53*	부***	일반	3,5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2,3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2,3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24,142,419		
전통시장	80,000	인별합계금액	24,232,469
대중교통	10,050		

■ 2015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15,972,328
대중교통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사용액)
일반	19,650,707	
전통시장	500	11,750
대중교통	11,250	
인별합계금액	19,662,457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 추가공제율 사용분(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70220-96403030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입니다. 전자문서는 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진본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8,691,176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50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7,479,062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1,25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3,480,469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 추가공제율 사용분(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64,196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64,196
대중교통	0		

■ 2015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19,420
대중교통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사용액
일반	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액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 추가공제율 사용분(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6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엄민영	730606-*****	

■ 2016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친그연스즈	, 조리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2.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상반기 사용액: 추가공제율 사용분(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상반기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